

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동욱, 김용호, 김춘곤,
남창진, 박철성, 서호연,
이상욱, 최민규, 홍국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정부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·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연구개발·보급과 사업화,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2020.3.24.)하여 시행(2021.3.25.)하고 있음.
-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부재한 상태임.
-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라.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
- 마. 치유농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바. 치유농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사.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아.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자.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).
- 차.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- 카.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치유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,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·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치유농업”이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(이하 “치유농업자원”이라 한다)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“치유농업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치유농업서비스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·사회적·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치유농업사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은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
2.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
3.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
4.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5.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6.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
7.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,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·보급
2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
3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·체험·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
4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
5.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제9조(치유농업지원위원회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
4.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
5.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)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, 법인 또는 단체, 교육기관, 기업체 등(이하 “관련 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